

2024년 하반기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자체사업 위탁의료기관 모집 공고(안)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인천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 기간 : 2024. 7. 5. (금) ~ 2024. 7. 18. (목) (2주간)

※ 위 모집 기간 내 미신청시, 2025년 사업 참여 모집공고시 신청 가능

2. 모집 대상 : 인천 서구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의사(의과진료과목)를 두어야 사업참여가능)

3. 모집 방법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서 작성 후 의료기관 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하여 스캔본을 이메일(jjuny2327@citizen.seoul.kr)로 제출(또는 원본 방문 제출)

※ 날인 또는 서명 없을시 반려

※ (이메일이 아닌) 팩스 제출에 따른 접수누락시, 책임지지 않음

4. 제출 서류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서(날인 또는 서명 필수) 1부

② 하반기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질병관리청 접종시스템) 입력

③ 접종비 상환용 통장사본 1부(계좌변경시에만 제출)

5. 문 의 처 : 서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예방접종실(☎ 032-718-0478)

☐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 안내

○ 접종 대상

- 75세이상 어르신(1949. 12. 31. 이전출생) : 서구 1년이상 주민등록 두고 거주 및 접종당일 서구민

-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1959. 12. 31. 이전출생) : 인천 1년이상 거주 및 접종당일 서구민

※ 위 대상자 중 과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분

○ 사업 기간 : 2024. 8. 1.(목) ~ 2024. 12. 31.(일)

※ 백신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접종 비용 : 시행비 19,610원

※ 대상포진 백신은 현물로 공급한다.

2024. 7. 4.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장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서

(앞 쪽)

|     |      |                                                     |
|-----|------|-----------------------------------------------------|
| 제1조 | 계약목적 |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필수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

|     |       |               |                                     |         |  |
|-----|-------|---------------|-------------------------------------|---------|--|
| 제2조 | “수탁자” | 의 료 기 관 명     |                                     | 요양기관번호  |  |
|     |       | 요양기관종별        |                                     | 표 시 과 목 |  |
|     |       | 주 소 ( 소 재 지 ) |                                     |         |  |
|     |       | 전 화           |                                     | 전자우편주소  |  |
|     |       | 대 표 자         |                                     | 생 년 월 일 |  |
|     |       | 면 허 종 별       |                                     | 면 허 번 호 |  |
|     |       | 의료정보시스템       | [    ] 사 용 ※ 사용사업체명 :<br>[    ] 미사용 |         |  |

|     |         |          |
|-----|---------|----------|
| 제3조 | 위탁계약 조건 | 별지 뒷면 참조 |
|-----|---------|----------|

|     |                 |                                                                                                                                                                                                                                                                            |
|-----|-----------------|----------------------------------------------------------------------------------------------------------------------------------------------------------------------------------------------------------------------------------------------------------------------------|
| 제4조 |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li><li>위탁기관은 ①인천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수탁기관이 제7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li></ul> |
|-----|-----------------|----------------------------------------------------------------------------------------------------------------------------------------------------------------------------------------------------------------------------------------------------------------------------|

|     |      |                                                                                                                                                                               |
|-----|------|-------------------------------------------------------------------------------------------------------------------------------------------------------------------------------|
| 제5조 | 계약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li></ul> |
|-----|------|-------------------------------------------------------------------------------------------------------------------------------------------------------------------------------|

|     |      |                                                      |
|-----|------|------------------------------------------------------|
| 제6조 | 백신종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대상포진</li></ul> |
|-----|------|------------------------------------------------------|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위탁자>    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

대표자 : 서구청장 강범석

(서명 또는 날인)

<수탁자> 의료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                               |       |
|------|-------------------------------|-------|
| 첨부서류 |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계좌변경시에만 첨부). | 수수료없음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계약조건 〉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① 접종대상자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75세이상 어르신(1949. 12. 31. 이전출생) : 서구 1년이상 주민등록 두고 거주 및 접종당일 서구민
  -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1959. 12. 31. 이전출생) : 인천 1년이상 거주 및 접종당일 서구민
  - ※ 위 대상자 중 과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분
- ②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예방접종 대상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접종당일 기준 인천 서구 1년이상 거주(75세이상) 또는 인천 1년이상 거주(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대상자 1인당 총1회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며, 지정병·의원이 아닌 장소에서 단체접종시(경로당, 복지관 등) 접종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④ 대상포진 백신은 현물로 공급하며, 예방접종 비용은 본인부담금 없이 사업 시행비 금액으로 한다. 사업 시행비는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사업지침에 준하여 지급금액이 정해지며 매년 변동 가능하다. 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 대상포진 백신 파손, 분실, 온도이탈 등 백신관리 부적정에 따라 백신 잔여량 불일치 건에 대해서는 현물백신을 채워넣어야 하며, 불가할시 백신비(구입단가)를 환수조치한다.
- ⑤ 반드시 예방접종 사전예진표 작성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진표는 5년간 보관한다.
- ⑥ 비용상환 신청은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접종 당일 입력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수기기록에 의한 청구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조회되지 않는 비용 청구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 ⑦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보관에 있어서 항상 2℃ ~8℃의 냉장온도를 유지하여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⑧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예방접종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국가예방접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 ⑨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⑩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⑪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4조에 따라 예방접종 후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⑫ 불임 <예방접종 의료기관의 백신보관장비(냉장고) 관리>를 숙지하고, 계약기간 중 “위탁의료기관 필수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 <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선정 기준 및 운영 관리 >

※ 대상포진 백신 보관관리·수용력 및 감염관리 수준, 접종 공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선정기준

- (참여 의료기관) 백신보관·관리, 공간확보 등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 선정 예정
- (백신보관·관리) ① 백신관리 전담자 지정\* ②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보유 ③ 냉장고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동온도기록장치(또는 디지털온도기록기) 및 온도 이탈 시 담당자에게 알람 기능(24시간 온도모니터링 기록이 가능해야 함) ④ 백신 보관온도 2~8℃ 유지

\* 주기적으로 백신 유효기간 확인,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관리, 백신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예방접종 의료기관의 백신보관장비(냉장고) 관리] 및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고

- (인력 확보) ① 예진 의사 1인 이상, ② 간호인력·행정보조인력 등 접종 필수인력 확보
  - \* (예진 의사, 시행 의사 및 의료인력) 예진, 접종, 접종 후 주의사항 설명 등 수행 / (보조인력 등) 접수, 예방접종내역 입력 등 수행(백신 공급, 오접종 예방 및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출력을 위해 실시간 등록 필요)
- (시설 확보) ① 백신 접종 준비 공간 별도 확보, ② 이상반응 관찰이 가능한 별도 공간 확보, ③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및 프린터 보유 필요
  - \* 필요시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출력
- (이상반응 대처) ① 급성이상반응 발생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한 에피네프린 등 응급처치 의약품 및 장비 구비 필수 ②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15~30분), ③ 응급환자 발생시 관내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 파악 필요

## < 예방접종 의료기관의 백신보관장비(냉장고) 관리 >

### 1. 백신 보관장비 선정 및 보관

- 백신 보관장비(냉장고)는 신중하게 선정, 올바르게 설치, 주기적 유지관리 및 보수 실시
- 백신 보관장비는 의약품 보관용으로 허가받은 제품 사용을 권장
  - 의약품 보관용으로 허가받은 보관장비가 없는 경우 냉장·냉동칸이 분리된 가정용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냉장 전용 1도어 냉장고 사용을 권고
  - 단, 냉장·냉동고가 연결되어 있으며 문이 하나인 1도어 냉장고는 백신 보관에 적합하지 않음
- 백신 보관장비는 백신 보관 용도 외 사용 금지(음식물, 백신이외의 의약품, 검체 등과 함께 보관하지 않음)
- 다른 종류의 백신을 보관할 때 냉장고 내 별도의 구역을 정하고 보관용기 등에 명확히 라벨을 부착하여 보관하여 백신 투여 오류의 가능성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해야 함.

### 2. 백신 보관장비의 온도 모니터링 장치 설치

- 백신 보관장비는 24시간 동안 보관장비 내부 온도를 연속적으로 기록·보관, 기준 온도 이탈 시 알람·이탈시간 정보, 문 잠금 경고 기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함

#### - (위탁의료기관 필수 조건)

- ① 냉장고 외부에 내부온도 표시창 탑재 또는 냉장고 내부에 온도센서를 넣고 온도계는 냉장고 외부에 부착하여, 문을 열지 않고도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온도계 구비
- ② 24시간 온도 모니터링 기록 가능해야 함(백신관리담당자 휴대폰 앱 설치)
  - ※ 보건소 요청시 의료기관에서는 24시간 온도모니터링 기록내용을 제공해야 함
  - ※ 정전 등 불가피한 상황 대비 1~30분 단위 모니터링 기록 확인함(가급적 1분단위)
- ③ 근무시간 외에도(주말, 휴일 포함) 냉장고의 설정온도(2~8℃) 이탈 즉시 접종기관 백신 보관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알람을 주는 기능
- ④ 백신 보관장비 내부 온도는 매일 2회 이상 확인하여 수기 기록
  - ※ 보관장치 문에 온도기록지 비치하여 기록
    - 연속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있는 보관장비를 구비하여 온도 모니터링을 실시하더라도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않음.
  - ※ 수기온도기록지 반드시 5년 보관(또는 자동온도기록 출력지 형태로 보관)